

고운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

□ 제정 : 2015. 1. 15.

□ 개정 : 2017. 1. 1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수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 창업지원단(이하 “창업지원단”이라 한다.)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본교 학생, 교직원, 연구원에 대한 창업사업화 및 창업 친화적 환경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운창업지원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

센터는 이 규정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자금·특허·전문 멘토링·경영기술 및 마케팅 등의 지원
2. 창업보육사업과의 연계 지원
3. 창업동아리 운영·지원
4. 창업경진대회 등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시행
5.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글로벌 창업지원
6. 기타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 2 장 조직 및 운영

제3조(조직)

센터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센터장
2. 행정팀

제4조(센터장)

- ① 센터장은 창업 또는 기업경영 경험이 있는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직무전반을 통할한다.

제5조(행정팀)

- ① 행정팀장은 본교 직원으로 보하되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행정팀 내에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인사규정에 따른다.

제6조(위원회)

센터는 이 규정에 정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3 장 재 정

제7조(재원)

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지원기관의 출연금 및 지원금
2. 본교의 지원금
3. 센터사업에 관하여 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지원금
4. 기타 수입금

제8조(회계)

센터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창업지원단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9조(예, 결산 및 사업)

센터장은 센터의 예산과 사업계획서, 결산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.기금의 운영은 창업지원단 관련규정에 따른다.

제 4 장 기 타

제10조(세부사항)

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1. 이 제정 규정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